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87호 2010. 10. 1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48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48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51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 ----- 7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52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7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5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 7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5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 80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088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8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0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86

회 람								
--------	--	--	--	--	--	--	--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48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0. 0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검암1지구	서구 검암동 635번지	663,302.9	-	663,302.9	

나. 용도지역·지구의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63,302.9	-	663,302.9	1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396,324.1	-	396,324.1	69.8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1,989.1	-	151,989.1	22.9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4,989.7	-	114,989.7	17.3	

다. 도시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 로 : 변경 없음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합 계		15,974	88	1,992	11	10,416	60	3,566	17
일 반 도	대로	-	-	-	-	-	-	-	-
	중로	3,113	7	-	-	2,109	3	1,004	4
	소로	12,407	68	1,942	9	8,098	53	2,367	6
보 행 자 전용도로	중로	49	2	-	-	-	-	49	2
	소로	405	11	50	2	209	4	146	5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종로	2	169	18~25	보조 간선	1,507	검암동 산19 남측지구계	대로1-19 (검암동71-3)	일반 도로		인고93-130 (`93.9.28)	
기정	종로	2	170	15~16	국지 도로	82	종로2-169	종로3-141	일반 도로		인고2000-113 (2000.6.30)	
기정	종로	2	184	18~25	보조 간선	520 (2,420)	검암동5-1 (서측지구계)	대로1-19	일반 도로		인고93-130 (`93.9.28)	
기정	종로	3	72	12	집산 도로	194	소로3-4	소로1-3	일반 도로		인고93-130 (`93.9.28)	
기정	종로	3	138	12	국지 도로	323	검암동 244-3	종로 2-16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종로	3	139	12	국지 도로	325	종로 2-169	종로 3-14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종로	3	140	12	특수 도로	24	대로 1-19	종로 3-139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종로	3	141	12	국지 도로	162	종로 2-170	종로 3-142	일반 도로	-	인고2000-113 (2000.6.30)	
기정	종로	3	142	12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종로 3-141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	10~16	국지 도로	1,061	종로 2-169	종로 2-16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75	종로 3-72	소로 2-1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282	소로 1-20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4	10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2-44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5	10~12	국지 도로	254	종로 2-184	종로 3-13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32	종로 2-169	소로 2-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34	종로 2-169	소로 2-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6	10	국지 도로	32	종로 2-169	소로 2-1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7	8	국지 도로	36	종로 2-184	소로 2-6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8	10	국지 도로	36	종로 2-184	소로 2-6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0	10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1-3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58	대로 1-1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209	중로 3-141	중로 2-17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33	소로 1-2	소로 1-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33	소로 1-2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107	소로 1-2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216	소로 2-10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6	8	국지 도로	319	소로 1-1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158	소로 2-26	소로 2-23	일반 도로	-	인고2000-113 (2000.6.30)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113	소로 1-3	소로 2-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9	8	국지 도로	130	소로 1-3	소로 2-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62	소로 2-18	소로 2-1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166	중로 2-169	소로 1-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2	8	국지 도로	120	소로 1-3	소로 2-2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3	8	국지 도로	220	중로 3-138	소로 1-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4	8	국지 도로	62	중로 3-138	겸암4공원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5	8	국지 도로	130	소로 2-23	소로 2-2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6	8	국지 도로	32	소로 1-1	소로 2-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7	8	국지 도로	244	소로 1-3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93	소로 2-111	소로 2-2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9	8	국지 도로	132	소로 2-28	소로 2-2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30	8	국지 도로	34	소로 1-1	소로 2-2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31	8	특수 도로	34	중로 2-169	소로 2-111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2	8	국지 도로	109	중로 2-16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36	8	특수 도로	109	중로 2-169	소로 3-4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37	8	국지 도로	79	소로 1-1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38	8	특수 도로	34	중로 2-169	소로 2-111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39	8	국지 도로	98	소로 2-37	소로 2-10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0	8	국지 도로	231	중로 3-138	소로 2-4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1	8	국지 도로	191	중로 3-138	소로 2-4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2	8	특수 도로	32	소로 1-1	소로 2-40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3	8	국지 도로	256	중로 3-139	소로 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4	8	국지 도로	615	중로 3-139	소로 2-4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5	8	국지 도로	214	소로 1-1	소로 2-4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6	8	국지 도로	225	중로 3-139	소로 2-4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7	8	국지 도로	121	소로 2-45	소로 2-4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8	8	국지 도로	130	소로 2-45	소로 2-4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9	8	국지 도로	110	소로 1-5	소로 2-4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0	8	국지 도로	32	중로 3-139	소로 2-4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1	8	국지 도로	76	중로 2-169	소로 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2	8	국지 도로	115	중로 2-16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3	8	국지 도로	259	중로 2-184	소로 2-5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4	8	국지 도로	231	중로 2-184	소로 2-5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5	8	국지 도로	110	중로 2-16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6	8	국지 도로	206	중로 2-184	소로 2-6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7	8	국지 도로	109	소로 2-56	소로 3-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8	8	국지 도로	113	소로 2-56	소로 3-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9	8	국지 도로	204	중로 2-169	연희동 73-1 남측지구계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0	8	국지 도로	134	소로 2-59	소로 3-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1	8	국지 도로	79	소로 2-59	소로 3-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2	8	국지 도로	107	소로 1-1	소로 3-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3	8	국지 도로	106	소로 2-65	소로 2-6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4	8	국지 도로	26	소로 1-17	소로 3-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5	8	국지 도로	242	소로 2-62	소로 2-6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6	8	국지 도로	92	소로 2-65	소로 3-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7	8	국지 도로	30	중로 2-169	소로 2-5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9	8	국지 도로	68	소로 1-1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11	8	국지 도로	509	소로 1-3	소로 1-1	일반 도로	-	인고2000-113 (2000.6.30)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10	중로 2-16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1,379	중로 2-184	소로 2-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305	중로 2-184	소로 2-5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392	대로 1-19	중로 2-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7	6	특수 도로	26	소로 2-21	3호어린이공 원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8	6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2-22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2	6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2-23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4	6	특수 도로	36	중로 3-139	소로 2-111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5	6	특수 도로	34	중로 2-169	소로 2-46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86	소로 2-58	소로 2-6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95	중로 2-170	소로 2-14	일반 도로	-	인고2000-113 (2000.6.30)	

2) 주 차 장 : 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개소		5,449.8	-	5,449.8		
기정	1	검암1주차장	노외 주차장	검암동 607-1	2,653.9	-	2,653.9	인고93-130 (`93.9.28)	
기정	2	검암2주차장	노외 주차장	검암동 659	2,795.9	-	2,795.9	인고93-130 (`93.9.28)	

3) 공 원 : 변경 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8개소		25,141.3	-	25,141.3		
기정	2	장모루 근린공원	장모루 근린공원	근린공원	검암동 594-2	5,703.6	-	5,703.6	인고93-130 (`93.9.28)	
기정	2	간재울 어린이공원	간재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07-2	2,500.2	-	2,500.2	인고93-130 (`93.9.28)	
기정	10	검암 근린공원	검암 근린공원	근린공원	검암동 636-9	654.2 (296,308.2)	-	654.2 (296,308.2)	건고66-2701 (`66.8.31)	()는 전체 면적
기정	3	중동 어린이공원	중동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13-5	4,224.6	-	4,224.6	인고93-130 (`93.9.28)	
기정	4	검바위 어린이공원	검바위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19-5	2,040.0	-	2,040.0	인고93-130 (`93.9.28)	
기정	5	과기 어린이공원	과기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57-2	2,394.7	-	2,394.7	인고93-130 (`93.9.28)	
기정	6	빈정 어린이공원	빈정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81	6,983.5	-	6,983.5	인고93-130 (`93.9.28)	
기정	7	검암 소공원	검암 소공원	소공원	검암동 636-6	640.5	-	640.5		

4) 녹 지 : 변경 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개소		3,794.4	-	3,794.4		
기정	1	검암1녹지	완충녹지	검암동 595-1~666-4	3,794.4	-	3,794.4	인고93-130 (`93.9.28)	

5) 학 교 : 변경 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개소		47,009.2	-	47,009.2		
기정	1	초등학교	초등학교	검암동 629-3	11,048.7	-	11,048.7	인고93-130 (`93.9.28)	
기정	2	중학교	중학교	검암동 619-4	12,307.4	-	12,307.4	인고93-130 (`93.9.28)	
기정	3	서인천 고등학교	고등학교	검암동 636-7	23,653.1	-	23,653.1		

6) 공 공 청 사 : 변경 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개소		3,462.4	-	3,462.4		
기정	1	공공청사	동 사 무 소	검암동 606-8	1,050.1	-	1,050.1	인고93-130 (`93.9.28)	
기정	2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검암동 606-9	1,050.3	-	1,050.3	인고93-130 (`93.9.28)	
기정	3	공공청사	우 체 국	경서동 660-2	679.8	-	679.8	인고93-130 (`93.9.28)	
기정	4	공공청사	파 출 소	경서동 660-3	682.2	-	682.2	인고93-130 (`93.9.28)	

7) 하 수 도 : 변경 없음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11.5	-	411.5		
기정	1	하수도	오수펌프장	검암동 594-1	411.5	-	411.5	인고2000-113 (2000.6.30)	

8) 사회복지시설 : 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76.1	-	1,676.1		
기정	1	사회복지시설	검암동 679-3	1,676.1	-	1,676.1	인고2004-258 (2005. 1. 3)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A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2	58,233.4	2	380.4	공동건축
		3	45,001.4	
		4	3,806.7	
		5	6,781.1	공동건축
		6	2,263.8	
34	12,517.3	1	10,222.5	공동건축
		2	745.0	
		3	1,549.8	
37	11,925.9	1	11,925.9	
56	11,746.4	1	11,293.8	공동건축
		2	452.6	

2) 근린생활시설용지

○ 필지규모 600㎡ 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수 지정.

(단,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규모가 300㎡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6	2,715.2	1	810.9	4
		2	1,098.0	5
		3	806.3	4
7	5,255.3	1	1,460.7	6
		2	467.6	2
		3	696.2	2
		4	1,152.1	4
		5	302.2	-
		6	370.9	2
		7	805.6	4
8	4,438.0	1	264.5	-
		2	1,110.6	5
		3-1-1	301.2	-
		3-1-2	306.2	-
		3-1-3	305.4	-
		3-1-4	624.5	2
		3-1-5	305.5	-
		3-1-6	311.1	-
		3-1-7	306.9	-
		3-2	270.0	-
		4	332.1	2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12	3,721.1	1	559.8	2
		2	523.1	2
		3	308.0	-
		4	167.1	-
		5	1,552.2	3
		6	330.5	-
		7	280.4	-
21	5,547.4	1	156.3	-
		2	235.2	-
		3	464.0	2
		4	668.0	2
		5-1	991.9	2
		5-2	2,040.0	5
		5-3	992.0	2
23	4,023.7	1	208.8	공동건축
		2	114.1	
		3	213.2	-
		4	523.5	-
		5	808.4	-
		6	718.7	2
		7	1,437.0	4
24	3,189.3	1	394.2	-
		2	1,082.4	3
		3-1	396.1	-
		3-2	430.0	-
		3-3	886.6	2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25	973.9	1	413.1	-
		2	560.8	2
26	1,654.2	1	121.4	-
		2	746.5	3
		3	786.3	3
40	3,554.9	1	1,371.9	6
		2	2,183.0	10
55	3,555.2	1	2,019.7	8
		2	1,535.5	6
58	4,745.5	1-1	1,322.4	6
		1-2	539.4	2
		1-3	539.4	2
		2	1,630.2	8
		3	714.1	2
77	3,854.6	1	1,886.4	8
		2	1,174.0	4
		3	794.2	3
82	3,711.4	1	394.4	2
		2	117.1	-
		3	230.9	-
		4	502.8	2
		5	159.9	-
		6	207.0	-
		7	235.3	-
		8	384.1	2
		9	221.5	-
		10	216.2	-
		11	129.8	-
		12	230.2	-
		12-1	90.0	-
		13	154.1	-
		14	311.0	-
15	127.1	-		
85	1,260.1	1	1,260.1	4

가구 번호	기 정				가구 번호	변 경				
	가구 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가구 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86	4,194.3	1-1	330.3	-	86	4,194.3	1-1	330.3	-	
		1-2	342.7	-	1-2		1-2	342.7	-	
		1-3	231.2	-	1-3		1-3	231.2	-	
		2	218.4	-	2		2	218.4	-	
		3	334.0	-	3		3	334.0	-	
		4	311.3	-	4		4	311.3	-	
		5	197.1	-	5		5	197.1	-	
		6	1,708.1	3	6		6	1,708.1	3	
		7	186.3	-	7		7	186.3	-	
		8	334.9	-	8		8	334.9	-	
91	3,585.2	1	694.1	3	91	3,585.2	1	694.1	3	
		2	752.5	2	2		2	752.5	2	
		3	600.9	2	3		3	600.9	2	
		4	124.6	-	4		4	124.6	-	공동개발
		5-1-1	378.1	2	5-1-1		5-1-1	378.1		
		5-1-2	218.9	-	5-1-2		5-1-2	218.9	-	
		5-2	816.1	4	5-2		5-2	816.1	4	
92	5,498.6	1	1,319.7	6	92	5,498.6	1	1,319.7	6	
		2	378.5	2	2		2	378.5	2	
		3	1,902.4	8	3		3	1,902.4	8	
		4	1,021.6	4	4		4	1,021.6	4	
		5	509.0	2	5		5	509.0	2	
		6	367.4	2	6		6	367.4	2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93	3,769.4	1	1,081.8	2
		2	1,007.3	2
		3	499.8	-
		4	424.1	-
		5	270.8	-
		6	485.6	-
94	4,165.7	1	294.1	-
		2	284.2	-
		3	139.2	-
		4	515.0	2
		5-2	363.1	2
		5-3	316.6	-
		5-4	342.5	-
		6	262.5	-
		7	202.7	-
		8	246.9	-
		9	213.2	-
		10	225.1	-
		11	150.8	-
		12	183.7	-
13	184.0	-		
14	242.1	-		
100	2,592.6	1	628.3	2
		2	336.8	-
		3	378.2	-
		4-1	350.4	-
		4-2-1	329.6	-
		4-2-2	334.6	-
		5	234.7	-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101	2,526.9	1	923.0	4
		2	707.9	4
		3	896.0	4
103	3,784.1	1-1	301.5	-
		1-2	262.5	-
		1-3	222.1	-
		2	165.1	-
		3	222.4	-
		4	315.4	-
		5	984.8	5
		6	175.1	-
		7	221.7	-
		8	156.6	-
		9	756.9	3
106	5,585.6	1	195.0	-
		2	469.3	2
		3	209.1	-
		4	839.4	4
		6	487.3	2
		5	245.3	-
		7	168.3	-
		8	741.9	2
		9	315.6	-
		10	325.5	2
		11	118.8	-
		12	237.5	-
		13	159.0	-
		14	245.1	-
		15	443.5	2
		16	385.0	2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91	4	공동개발 지정	과소획지 개발 유도
	5-1-1	공동개발 지정	과소획지 개발 유도

3) 단독주택용지

○ 필지규모 400㎡ 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수 지정

(단,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규모가 200㎡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 단독주택용지(C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18	4,502.8	1	223.8	-
		2-1	639.1	4
		2-2	398.6	2
		2-3	523.5	2
		3	746.1	2
		4-1	200.5	-
		4-2	893.0	3
		4-3	496.0	2
		5	382.2	2
19	2,987.7	1-1	405.1	2
		1-2	380.9	2
		1-3	293.0	-
		2	195.6	-
		3	310.2	-
		4	149.2	-
		5	120.1	-
		6	156.7	-
		7	190.7	-
		8	146.0	-
		9	144.9	-
10	495.3	2		
20	3,359.9	1	1,428.0	6
		2	421.7	2
		3	570.7	2
		4	779.4	3
		5	160.1	-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25	5,566.6	3	1,459.6	5
		4	1,395.2	5
		5-1	517.7	2
		5-2	532.2	2
		6	1,049.8	4
		7	214.3	공동건축
		8	113.1	
		9	284.7	-
26	1,731.9	5	462.0	2
		6	244.9	-
		7	1,025.0	4
27	1,322.1	1	421.4	2
		2	459.2	2
		3	441.5	2
28	2,918.6	1	322.0	-
		2	423.4	2
		3	633.4	3
		4	274.7	-
		5-1	835.3	4
		5-2	429.8	2
29	3,590.7	1-1	441.8	2
		1-2	208.0	-
		1-3	208.0	-
		1-4	208.0	-
		1-5	208.0	-
		1-6	208.0	-
		1-7	208.0	-
		1-8	208.0	-
		1-9	208.0	-
		1-10	208.0	-
		1-11	208.0	-
		1-12	441.5	2
		2	333.6	-
		3	293.8	-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번호	변경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가구면적 (㎡)	획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위 치	면적(㎡)	
30	4,675.1	1	1,229.1	3	30	4,675.1	1	1,229.1	3
		2	484.3	-			2	484.3	-
		3	393.4	-			3	393.4	-
		4	295.4	-			4	295.4	-
		5	465.1	-			5	465.1	-
		6	1,192.1	4			6	1,192.1	4
		7	615.7	2			7	615.7	2
31	2,931.8	1	396.3	-	31	2,931.8	1	396.3	-
		2	777.5	2			2	777.5	2
		3	1,122.7	3			3	1,122.7	3
		4	406.3	2			4	406.3	2
		5	229.0	-			5	229.0	-
33	3,018.8	1	1,300.0	5	33	3,018.8	1	1,300.0	5
		3	1,468.1	8			3	1,468.1	8
		4	250.7	-			4	250.7	-
41	3,268.4	1	959.5	4	41	3,268.4	1	959.5	4
		2-1-1	899.8	4			2-1-1	899.8	4
		2-1-2	898.9	4			2-1-2	898.9	4
		3	510.2	2			3	510.2	2
42	4,197.7	1	2,707.0	12	42	4,197.7	1	2,707.0	12
		2	1,490.7	6			2	1,490.7	6
43	5,218.1	1	293.3	-	43	5,218.1	1	293.3	-
		2	213.1	-			2	213.1	-
		4	253.4	-			4	253.4	-
		5	720.2	2			5	720.2	2
		6	277.3	-			6	277.3	공동개발
		7	106.3	-			7	106.3	
		8	389.3	-			8	389.3	-
		9	649.5	2			9	649.5	2
		10-1	991.7	3			10-1	991.7	3
		10-2-1	772.1	-			10-2-1	772.1	-
		10-2-2	551.9	-			10-2-2	551.9	-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44	4,200.6	1	246.8	-
		2	274.4	-
		3	104.0	-
		4	127.8	-
		5	385.2	2
		6	380.8	2
		8	167.9	-
		9	219.2	-
		10	317.5	-
		11	161.7	-
		12	185.1	-
		13	427.8	2
		14	127.4	-
		15	195.7	-
		16	161.0	-
		17	214.3	-
		18	145.7	-
		19	358.3	-
		45	5,997.3	1
2	572.8			2
3-1	243.5			-
3-2	297.4			-
4	111.1			-
5	345.7			-
6	364.5			2
7	399.3			2
8	237.1			-
9	826.5			4
10	323.0			-
11	233.2			-
12	135.9			-
13	154.6			-
14	94.4			-
15	529.6	2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46	1,451.9	1-1	385.5	-
		1-2-1	288.7	-
		1-2-2	288.6	-
		2	200.0	-
		3	289.1	-
47	2,558.5	1	566.4	3
		2	640.2	3
		3	191.4	-
		4-1	284.2	-
		4-2	876.3	4
50	1,422.8	1	949.3	4
		2	290.0	-
		3	90.2	-
		4	93.3	-
51	4,943.5	1	922.5	4
		2-1	422.3	-
		2-2	264.7	-
		2-3	264.7	-
		2-4	264.7	-
		2-5	264.7	-
		2-6	264.7	-
		2-7	264.7	-
		2-8	422.3	-
		2-9	264.7	-
		2-10	264.7	-
		2-11	264.7	-
		2-12	264.7	-
		2-13	264.7	-
2-14	264.7	-		
53	2,403.1	2	201.3	-
		3	403.8	2
		4	1,147.5	4
		5	384.2	2
		6	266.3	-
54	4,957.0	1	243.2	-
		2	323.1	-
		3	521.6	2
		4	203.0	-
		5	1,156.9	4
		6	706.2	2
		7	1,387.6	6
9	415.4	2		

가구 번호	기 정				가구 번호	변 경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위 치	면적(㎡)	
59	2,761.5	1	359.6	-	59	2,761.5	1	359.6	-
		2-1	356.9	-			2-1	356.9	-
		2-2	356.9	-			2-2	356.9	-
		2-3	357.0	-			2-3	357.0	-
		2-4	357.0	-			2-4	357.0	-
		2-5	357.1	-			2-5	357.1	-
		2-6	357.0	-			2-6	357.0	-
		3	260.0	-			3	260.0	-
60	3,110.9	1-1	1,398.2	6	60	3,110.9	1-1	1,398.2	6
		1-2	668.4	2			1-2	668.4	2
		2	327.4	-			2	327.4	-
		3	201.8	-			3	201.8	-
		4	192.6	-			4	192.6	-
		5	322.5	-			5	322.5	-
61	3,309.7	1-1-1	283.7		61	3,309.7	1-1-1	283.7	
		1-1-2	283.5				1-1-2	283.5	
		1-2	597.9	2			1-2	597.9	2
		2	730.0	2			2	730.0	2
		3	206.1	-			3	206.1	-
		4	944.2	4			4	944.2	4
62	5,726.7	1	1,252.9	6	62	5,726.7	634-1	324.5	-
							634-9	531.4	-
							634-15	397.0	-
		2-1	385.0	2			634-2	385.0	2
		2-2	396.6	2			634-8	396.6	2
		3	1,822.7	5			634-7	281.0	-
							634-10	330.0	-
							634-11	330.0	-
							634-12	330.0	-
							634-13	439.3	-
							634-14	112.4	공동개발
		4	222.9	-			634-6	222.9	
5	120.5	-	634-5	120.5					
6	255.1	-	634-4	255.1	-				
7	1,271.0	4	634-3	1,271.0	4				
63	4,948.0	1	1,122.5	4	63	4,948.0	1	1,122.5	4
		2	411.1	2			2	411.1	2
		3	136.0	-			3	136.0	-
		4	379.9	2			4	379.9	2
		5	2,379.0	11			5	2,379.0	11
		6	519.5	2			6	519.5	2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64-1	1,523.8	1	90.1	-
		2	385.9	2
		3	407.3	2
		4	640.5	-
64-2	2302.1	1	870.6	4
		2-1	478.6	2
		2-2	952.9	4
64-3	1,654.6	1	1,654.6	4
65	3,887.7	1	832.5	4
		2	1,838.2	6
		3	370.4	-
		4	162.0	-
		5	168.0	-
		6	516.6	2
66	477.3	1	96.3	-
		2	381.0	2
67	3,160.0	1	720.6	3
		2	689.7	3
		3	155.1	-
		4	885.5	4
		5	311.8	-
		6	182.6	-
		7	116.7	공동건축
		8	98.0	
68	3,114.9	1	894.0	4
		2	559.1	2
		3	420.8	2
		4	259.2	-
		5	113.1	-
		6	110.7	-
		7	115.5	-
		8	145.6	-
		9	496.9	2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69	3,740.6	1-1	395.3	-
		1-2	231.6	-
		2	876.7	4
		3-1	292.7	-
		3-2	284.5	-
		3-3	284.6	-
		3-4	292.7	-
		4	210.0	-
		5	174.1	-
		6	117.8	-
		7	255.7	-
		8	170.5	-
		9	154.4	-
70	3,9991.0	1-1	248.0	-
		1-2	231.5	-
		1-3	231.6	-
		1-4	281.0	-
		1-5	259.6	-
		1-6	259.3	-
		2	112.8	-
		3-1	887.1	4
		4-1	237.8	-
		4-2	238.0	-
		4-3	232.0	-
		4-4	288.4	-
		4-5	244.0	-
		4-6	239.9	-
		71	3,684.9	1-1
1-2	228.1			-
1-3	228.1			-
1-4	228.1			-
2	979.9			4
3	777.2			3
4	267.8			-
5	744.6			4
72	3,683.0	1	1,032.0	4
		2-1	1,587.4	6
		3	144.3	-
		4	487.1	2
		5	432.2	2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 할 가 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73	3,485.4	1	105.9	-
		2	96.9	-
		3	331.8	-
		4-1	383.0	2
		4-2	380.3	2
		5	227.9	-
		6	472.9	2
		7	254.4	-
		8	292.9	-
		9	371.7	2
		10	344.2	-
74	2,650.1	1	681.9	3
		2	297.5	-
		3	378.1	2
		4	1,292.6	6
75	2,118.7	1	785.3	3
		2	147.7	-
		3	1,185.7	6
76	4,707.2	1	760.4	4
		2	3,505.9	8
		3	347.4	-
		4	93.5	-
78	5,359.8	1-1	1,031.1	3
		1-2-1-1	1,052.7	3
		1-2-1-2	340.4	-
		1-2-2	348.2	-
		2	2,587.4	8
79	4,938.6	1	665.8	2
		2	628.0	2
		3	1,316.8	4
		4-1	469.6	-
		4-2	466.2	-
		5	1,392.2	4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80	1,576.7	1	462.8	2
		2	454.1	2
		3	659.8	2
81	5,358.2	1	677.9	2
		2	1,023.4	3
		3	866.9	2
		4	366.0	-
		5	150.8	-
		6	204.2	-
		7	303.3	-
		8	195.1	-
		9	498.7	2
		10	396.4	-
		11	415.0	2
		12	260.5	-
83	5,268.2	1	313.6	-
		2	412.1	2
		3	232.5	-
		4	235.2	-
		5	398.2	-
		6-1	677.3	2
		6-3	299.9	-
		6-4	339.9	-
		6-5	362.0	-
		6-6	362.0	-
		6-7	362.0	-
		7	217.7	-
		8	467.1	-
9	588.7	2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87	4,231.6	1	699.0	3
		2	96.8	-
		3-1	295.3	-
		3-2	295.3	-
		3-3	295.3	-
		3-4	294.0	-
		4	260.6	-
		5	166.4	-
		6	205.4	-
		7	221.9	-
		8	247.7	-
		9	123.1	-
		10	231.8	-
		11	236.3	-
88	7,913.4	1-1	739.8	-
		1-2	412.0	-
		1-3	427.6	-
		1-4	435.8	-
		1-5	492.9	-
		1-6	499.7	-
		1-7	968.6	-
		1-8	989.8	-
		1-9	498.8	-
		1-10	484.2	-
		1-11	421.3	-
		1-12	409.1	-
		1-13	399.3	-
		1-14	734.5	-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89	3,816.7	1	2,872.9	10
		3	228.3	-
		4	186.0	-
		5	529.5	2
90	2,452.2	1	1,566.2	6
		2-1	428.0	-
		2-2	458.0	-
95	5,973.0	1	470.5	2
		2	319.2	-
		3	259.2	-
		4-1	363.9	-
		4-2	363.9	-
		5	1,494.5	6
		6	1,863.2	6
		7	145.6	-
		8	190.5	-
		9	260.4	-
		10	107.1	-
96	1,241.6	2	325.6	-
		3	134.6	-
		4	104.6	-
		5	217.1	-
		6	459.7	2
97	2,041.9	2	1,126.7	4
		3	438.2	2
		4	274.5	-
		5	202.5	-
98	2,175.6	1	833.7	3
		2	558.1	2
		3	181.0	-
		4	94.5	-
		5	229.1	-
		6	279.2	-
99	4,931.3	1	1,138.0	4
		2-1	796.3	2
		2-2	826.6	2
		3	651.2	2
		4	198.9	-
		5	500.1	2
		6	593.7	2
7	226.5	-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100	1,151.1	6	189.9	-
		7	346.5	-
		8	614.7	2
102	1,690.2	1	614.2	2
		2	1,076.0	4
104	4,042.8	1-1	570.0	2
		1-2-1	461.2	-
		1-2-2	297.5	-
		2-1	484.8	2
		2-2	653.9	2
		3	141.8	-
		4	315.9	-
		5	400.8	-
		6	372.0	-
		7	344.9	-
105	3,371.3	1	1,687.9	5
		2-1	415.1	2
		2-2	501.4	2
		3	327.7	2
		4	439.2	2
107	9,486.6	1	4,229.9	10
		2	1,507.9	4
		3	575.3	2
		4	413.5	2
		5	191.0	-
		6	2,569.0	6
108	3,101.1	1	3,101.1	13
110	2,683.5	1	577.5	2
		2	1,017.9	4
		3	387.7	2
		4	483.9	2
		5	216.5	-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111	4,136.7	1	3,995.6	12
		2	141.1	-
112	2,962.6	1	360.7	-
		2	1,900.1	5
		3	572.5	2
		4	129.3	-

■ 단독주택용지(C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43	6	공동개발 지정	과소획지 개발 유도
	7	공동개발 지정	과소획지 개발 유도
62	634-14	공동개발 지정 및 토지분할 반영	과소획지 개발 유도
	634-6	공동개발 지정 및 토지분할 반영	과소획지 개발 유도
	634-5	공동개발 지정 및 토지분할 반영	과소획지 개발 유도

4) 종교집회장용지 : 변경 없음

■ 종교집회장용지(F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44	1,308.0	621-19	271.0	공동건축
		621-6	1,037.0	
68	511.5	653-4	511.5	
96	2,961.5	657-1	2,961.5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 변경 없음

■ 공동주택용지(A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2(2~6),34,37,56	2(2~6),34,37,56 (공동주택지 A용도)	용 도	허용용도	°별표1의 A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A 불허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19층 이하	
		형 태	°별표2의 A	
		배 치	°별표3의 A	
		색 채	°별표4의 A	
		건 축 선	-	

2) 근린생활시설 용지 : 변경 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6(1~3),7,8,12,21, 23(1~7),24,25(1~2), ,26(1~3),40,55,58, 77,82,85(1),86,91,9 2),93,94,100(1~4- 2),101,103,106 (근린생활시설용지 B용도)	6(1~3),7,8,12,21, 23(1~7),24,25(1~2), ,26(1~3),40,55,58, 77,82,85(1),86,91,9 2),93,94,100(1~4- 2),101,103,106 (근린생활시설용지 B용도)	용 도	허용용도	°별표1의 B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B 불허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형 태	°별표2의 B	
		배 치	°별표3의 B	
		색 채	°별표4의 B	
		건 축 선	-	

3) 단독주택용지 : 변경

■ 단독주택용지(C1용도) 결정 조서(8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8(1,2,2-1,2-2,2-3,3,4-1,4-2,4-3), 19(1-1,1-2,1-3,2,6-10),20(5), 25(3,5-2,6),27(1-3),28(1-3,5-1),29(1-7~12), 30(1-7),31(1,2,5),42(1-2),43(1,2,4~9,10-1,10-2-1~2),44(14~19),45(4~7),46(1-1,1-2-1~2,2,3),47(1-3,4-1-1~2),50(1-4),53(2-4),54(1,4),59(2-4~5,3),60(1-1~2,2-5),61(1-1-1~2,5),62(2-2,3~4),64-1(1-3),64-2(1,2-1~2),64-3(1,65(2),66(2),67(1~8),68(1~9),69(1-1~2,2,3-1~4,4-9),70(1-4~4,4-9),70(1-4~6,4-1),72(3~4),73(3,4-1,5~6),74(2~3),75(2),76(1-4),78(1-1,1-2-1-1~2,1-2-2),79(1-3,4-1-2-2),79(1-3,4-1-2-2),80(1-3,4-1-2-2),81(1,9-1~2,5),83(6-5~7,7-9),87(1-2,3-1~3,5-1~4),88(1,1-1~6,1-14),89(3),90(1-1~14),89(3),90(1,2-1~2),95(2-3,7-8),96(2-6),97(4-5),102(1-2),104(1-1,1-2-1~2),104(1-1,1-2-1~2,2-1~2,3-7),105(1,2-1~2,3-7),105(1,2-1~2,3-4),107(1-5),110(1-5),110(1-5),111(1-2),12(1-4) 단독주택용지 C1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 폐 율 용 적 륜 높 이 형 태 배 치 색 채	·별표1의 C1 지정 및 권장용도 ·별표1의 C1 불허용도 ·50% 이하 ·150% 이하 ·3층 이하 ·별표2의 C1 ·별표3의 C1 ·별표4의 C	·별표1의 C1 지정 및 권장용도 ·별표1의 C1 불허용도 ·50% 이하 ·150% 이하 ·3층 이하 ·별표2 변경의 C1 ·별표3의 C1 ·별표4의 C	18(1,2,2-1,2-2,2-3,3,4-1,4-2,4-3), 19(1-1,1-2,1-3,2,6-10),20(5), 25(3,5-2,6),27(1-3),28(1-3,5-1),29(1-7~12), 30(1-7),31(1,2,5),42(1-2),43(1,2,4~9,10-1,10-2-1~2),44(14~19),45(4~7),46(1-1,1-2-1~2,2,3),47(1-3,4-1-1~2),50(1-4),53(2-4),54(1,4),59(2-4~5,3),60(1-1~2,2-5),61(1-1-1~2,5),62(2-2,3~4),64-1(1-3),64-2(1,2-1~2),64-3(1),65(2),66(2),67(1~8),68(1~9),69(1-1~2,2,3-1~4,4-9),70(1-4~4,4-9),70(1-4~6,4-1),72(3~4),73(3,4-1,5~6),74(2~3),75(2),76(1-4),78(1-1,1-2-1-1~2,1-2-2),79(1-3,4-1-2-2),79(1-3,4-1-2-2),80(1-3,4-1-2-2),81(1,9-1~2,5),83(6-5~7,7-9),87(1-2,3-1~3,5-1~4),88(1,1-1~6,1-14),89(3),90(1-1~14),89(3),90(1,2-1~2),95(2-3,7-8),96(2-6),97(4-5),102(1-2),104(1-1,1-2-1~2),104(1-1,1-2-1~2,2-1~2,3-7),105(1,2-1~2,3-7),105(1,2-1~2,3-4),107(1-5),110(1-5),110(1-5),111(1-2),112(1-4) 단독주택용지 C1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 폐 율 용 적 륜 높 이 형 태 배 치 색 채	·별표1의 C1 지정 및 권장용도 ·별표1의 C1 불허용도 ·50% 이하 ·150% 이하 ·3층 이하 ·별표2 변경의 C1 ·별표3의 C1 ·별표4의 C	·별표1의 C1 지정 및 권장용도 ·별표1의 C1 불허용도 ·50% 이하 ·150% 이하 ·3층 이하 ·별표2 변경의 C1 ·별표3의 C1 ·별표4의 C					
								18(1,2,2-1,2-2,2-3,3,4-1,4-2,4-3), 19(1-1,1-2,1-3,2,6-10),20(5), 25(3,5-2,6),27(1-3),28(1-3,5-1),29(1-7~12), 30(1-7),31(1,2,5),42(1-2),43(1,2,4~9,10-1,10-2-1~2),44(14~19),45(4~7),46(1-1,1-2-1~2,2,3),47(1-3,4-1-1~2),50(1-4),53(2-4),54(1,4),59(2-4~5,3),60(1-1~2,2-5),61(1-1-1~2,5),62(2-2,3~4),64-1(1-3),64-2(1,2-1~2),64-3(1),65(2),66(2),67(1~8),68(1~9),69(1-1~2,2,3-1~4,4-9),70(1-4~4,4-9),70(1-4~6,4-1),72(3~4),73(3,4-1,5~6),74(2~3),75(2),76(1-4),78(1-1,1-2-1-1~2,1-2-2),79(1-3,4-1-2-2),79(1-3,4-1-2-2),80(1-3,4-1-2-2),81(1,9-1~2,5),83(6-5~7,7-9),87(1-2,3-1~3,5-1~4),88(1,1-1~6,1-14),89(3),90(1-1~14),89(3),90(1,2-1~2),95(2-3,7-8),96(2-6),97(4-5),102(1-2),104(1-1,1-2-1~2),104(1-1,1-2-1~2,2-1~2,3-7),105(1,2-1~2,3-7),105(1,2-1~2,3-4),107(1-5),110(1-5),110(1-5),111(1-2),112(1-4) 단독주택용지 C1	건축선	-	건축선	-

■ 단독주택용지(C2용도) 결정 조서(10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8(5),19(3~5),20(1~4),25(4,5-1,6~9),28(4,5-2),29(1-1~6,2~3),31(3~4),41(1,2-1~1-2,3),44(1~6,8~13),45(1~2,3-1~2,8~11,15),51(2-8~14),53(5-6),54(2~3,5),59(2-6),61(1-2,2~4),62(2-1,5~7),70(1-1~3,2,3-1,4-2~6),71(5),72(5),73(1~2),74(1,4),76(2),83(3~5,6-1,6-3~4),95(1,4-1~2,5~6,9~11),97(2~3),98(3~5),99(1),107(1)	18(5),19(3~5),20(1~4),25(4,5-1,6~9),28(4,5-2),29(1-1~6,2~3),31(3~4),41(1,2-1~1-2,3),44(1~6,8~13),45(1~2,3-1~2,8~11,15),51(2-8~14),53(5-6),54(2~3,5),59(2-6),61(1-2,2~4),62(2-1,5~7),70(1-1~3,2,3-1,4-2~6),71(5),72(5),73(1~2),74(1,4),76(2),83(3~5,6-1,6-3~4),95(1,4-1~2,5~6,9~11),97(2~3),98(3~5),99(1),107(1) 단독주택용지 C2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C2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C2 불허용도	용도	18(5),19(3~5),20(1~4),25(4,5-1,6~9),28(4,5-2),29(1-1~6,2~3),31(3~4),41(1,2-1~1-2,3),44(1~6,8~13),45(1~2,3-1~2,8~11,15),51(2-8~14),53(5-6),54(2~3,5),59(2-6),61(1-2,2~4),62(2-1,5~7),70(1-1~3,2,3-1,4-2~6),71(5),72(5),73(1~2),74(1,4),76(2),83(3~5,6-1,6-3~4),95(1,4-1~2,5~6,9~11),97(2~3),98(3~5),99(1),107(1) 단독주택용지 C2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C2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C2 불허용도
		건 폐 율	·50% 이하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륜	·150% 이하	용 적 륜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높 이	·3층 이하		
		형 태	·별표2의 C2	형 태	·별표2 변경의 C2		
		배 치	·별표3의 C2	배 치	·별표3의 C2		
		색 채	·별표4의 C	색 채	·별표4의 C		
		건 축 선	-	건 축 선	-		

■ 단독주택용지(C3용도) 결정 조서(12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33(1,3,4),51(1,2-1~7),53(4),54(6~8),59(1,2-1~3),62(1),63(1,3,5~6),65(1,3~6),71(1-1~4,2),72(1,2-1),73(4-2,7~11),75(1,3,7),78(2),81(2~8),83(1~2),87(3-4,4),88(1-7~8),89(1,4~5),107(1,6),108(1) 단독주택용지 C3	33(1,3,4),51(1,2-1~7),53(4),54(6~8),59(1,2-1~3),62(1),63(1,3,5~6),65(1,3~6),71(1-1~4,2),72(1,2-1),73(4-2,7~11),75(1,3,7),78(2),81(2~8),83(1~2),87(3-4,4),88(1-7~8),89(1,4~5),107(1,6),108(1) 단독주택용지 C3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C3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C3 불허용도	용도	33(1,3,4),51(1,2-1~7),53(4),54(6~8),59(1,2-1~3),62(1),63(1,3,5~6),65(1,3~6),71(1-1~4,2),72(1,2-1),73(4-2,7~11),75(1,3,7),78(2),81(2~8),83(1~2),87(3-4,4),88(1-7~8),89(1,4~5),107(1,6),108(1) 단독주택용지 C3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C3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C3 불허용도
		건 폐 율	·50% 이하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륜	·150% 이하	용 적 륜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높 이	·3층 이하		
		형 태	·별표2의 C3	형 태	·별표2 변경의 C3		
		배 치	·별표3의 C3	배 치	·별표3의 C3		
		색 채	·별표4의 C	색 채	·별표4의 C		
		건 축 선	-	건 축 선	-		

4) 교육시설용지 : 변경 없음

■ 교육시설용지(D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46(4),57,64	46(4),57,64 (교육시설용지 D용도)	용 도	◦학교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5) 공공청사용지 : 변경 없음

■ 공공청사용지(E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23(8,9),85(2,3)	23(8,9),85(2,3) (공공청사용지 E용도)	용 도	◦공공청사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6) 종교용지 : 변경 없음

■ 종교용지(F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44(7,20),68(10),96(7)	44(7,20),68(10),96(7) (종교용지 F용도)	용 도	◦종교집회장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7)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용지(G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90(3)	90(3) (사회복지시설용지 G용도)	용 도	◦별표1 G용도의 지정 및 권장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별표 1] : 건축물 용도 분류표 : 변경 없음

[별표 2] : 건축물 형태 분류표 : 변경

[별표 3] : 건축물 배치 분류표 : 변경 없음

[별표 4] : 건축물의 색채 분류표 : 변경 없음

[별표 5] : 차량동선·주차시설·단지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별표 6] :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별표 7]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 변경 없음

[별표 8] : 기타사항 : 변경 없음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변경 없음)

구분	A	B	C1	C2	C3	D ~ G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D) 공공청사(E) 종교집회장(F) 사회복지시설(G)
권장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종 및 확장장치 없는 것에 한함)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도서관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도서관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 12m이상 도로에 12m 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G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식품제조업) (단, 결식아동 및 사회복지사업에 한하며 지하1층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소매점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 					

- 주1) 단독주택지(C)의 경우 경사지붕 내에 설치하는 다락의 층고를 1.5m초과 1.8m이하로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는 다락층을 포함하여 4층 이하, 용적률 180% 이하로 완화
- 주2)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 통로는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
- 주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가구 및 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에 한함
- 주4)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유도하되 다른 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주5) 가설건축물 제한(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 판별, 샌드위치 판별,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
- 주6) 권장용도(C1,C2,C3)는 도로폭원에 따라 완화하고 있으나 도로모퉁이변(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하는 획지)에 대해서는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
- 주7) 획지분할시 전면이 기준에 접한 도로 폭보다 적은 도로에 접할 경우, 좁은 도로변의 용도 적용

[별표 2]

건축물 형태 분류표 (기정)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형태
공동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ㄴ”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근린생활시설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 ◦근린생활시설의 1층 서터는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검양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단독주택용지(C1,C2,C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단, 다른 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하여 우리 동네라는 분위기 창출을 위한 공간형성)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지하층의 주거용도 이용을 금지토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도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0m이하로 제한 ◦검양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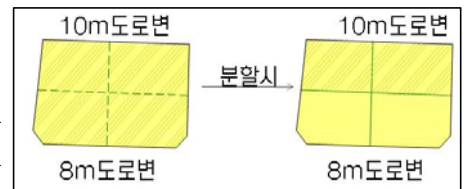
건축물 형태 분류표 (변경)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형태
공동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ㄴ”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근린생활시설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 ◦근린생활시설의 1층 서터는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검양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단독주택용지 (C1,C2, C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하되 다른 형태의 지붕도 설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하여 우리 동네라는 분위기 창출을 위한 공간형성)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지하층의 주거용도 이용을 금지토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도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0m이하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경사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붕의 가중평균선을 기준으로 1층의 높이를 산정) ◦검양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별표 3]

건축물 배치 분류표 (변경 없음)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형태
공동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 ◦담장 설치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높이 1.2m 이하) 설치를 권장 - 공원 및 녹지시설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담장(높이 1m이하) 설치 - 동일 블록내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사용, 통일화된 형태로 블록별 일체감 부여 ◦담장설치불허구간 : 보행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담장을 없애고 같은 동네로서의 공간형성) ◦같은 단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가급적 한가지로 통일토록 권장
근린생활시설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중로 2-169호선, 중로 2-184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단독주택용지 (C1,C2,C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 지정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담장으로 설치 ◦폭 12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획지분할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이 8m 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1적용 - 전면이 10m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2적용 - 전면이 12m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3적용 ◦권장용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모퉁이변(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한 획지에 대한 기준은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



[별표 4]

건축물의 색채 분류표 (변경 없음)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색채
공동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암1구역 북측 및 서측은 Landmark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 ◦인천시의 시색인 청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주변은 안정된 주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침착한 색조계열 사용
근린생활시설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활동축으로서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단, 강조색은 가능)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
단독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검정색 계통의 벽돌사용을 지양하여 밝고 명량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 색채계획목표

◦색채계획은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로서 주민들에게 심미감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느끼도록 하는 요소임

-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한 색채 사용
- 인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색채감의 조성
- 구역내의 변화로운 색채 형성으로 식별성 및 미관의 개선
- 대상주민 뿐만 아니라 도로를 통해 보여지는 가로경관의 시각효과 개선

■ 색채의 분류

◦자율적인 색채계획을 최대한 보장하되 색채사용의 범위를 명시하여 색채적용의 융통성을 부여토록 함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조색 :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 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
- 보조색 : 주조색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30%를 차지
- 강조색 :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

[별표 5]

차량동선, 주차시설, 단지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기 타 사 항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 간선 및 집산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1) 차량출입불허구간

-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30m이내의 구간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10m이내 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

2) 공동주차통로

- 획지 2개소당 1개의 공동주차통로 설치를 권장하며 통로폭 최소 3 m이상 확보(단,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위치 선정 가능)

◦ 주차에 관한 계획

- 공동주차장 설치 및 공동진출입 유도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세대당 1대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유도

■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 기본방향

- 보행활동 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치

-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

[별표 6]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용도	도면 표시	도시계획도로	
도시 계획 도로	-	가로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한 수량으로 설치토록 유도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복합적 기능을 갖도록 설치 ◦시설간에 통일성 있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하여 가로를 장식할 수 있도록 설치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지역별, 가로망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인천시의 시목인 목백합 또는 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가로수는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떨어져 식재하며, 식재간격은 6~8m을 기준으로 함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 - 포장구획을 소단위로하여 친근감 유지 - 재료는 소형고압블럭 및 일반콘크리트블럭 등의 재료 사용 유도 ◦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조명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조절 - 조명등의 설치타입은 주변여건에 적합되도록 선택 ◦보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달도록 계획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별표 7]**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변경 없음)**

-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별표 8]**기 타 사 항 (변경 없음)**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서구 관련조례를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2.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부분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48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0. 0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검암2지구	서구 검암동 506-1번지 일원	408,826.0	-	408,826.0	

나. 용도지역·지구의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 주거지역 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08,826.0	-	408,826.0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0,719.0	-	210,719.0	51.5	
	제2종일반주거지역	66,286.0	-	66,286.0	16.2	
	제3종일반주거지역	131,821.0	-	131,821.0	32.3	

■ 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 제한 내용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	1	고도 지구	최고 고도 지구	검암동 519-1번지 일원	5층 이하	154,282.0	-	154,282.0	인고2000-113 (2000.6.30)	

다. 도시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1) 도 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합 계		9,699	49	1,368	12	5,344	28	2,987	9
일 반 도 로	대로	-	-	-	-	-	-	-	-
	중로	1,533	5	-	-	1,059	3	474	2
	소로	7,864	38	1,261	10	4,260	24	2,343	4
보행자전용도로		302	6	107	2	25	1	170	3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69	18~25	보조 간선	783 (2,330)	대로 1-19 (검암동산19)	검암동71-3 북측지구계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2	171	15	국지 도로	157	중로 2-169	소로 3-23	일반 도로	-	인고2000-113 (2000.6.30)	
기정	중로	2	172	15	국지 도로	119	중로 2-169	소로 1-2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3	145	12	국지 도로	200	중로2-169	소로 2-7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3	146	12	국지 도로	274	중로2-172	소로 3-23	일반 도로	-	인고2000-113 (2000.6.30)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424	소로 1-25	중로 3-14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7	10~16	국지 도로	123	중로2-169	소로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9	10~16	국지 도로	194	중로 2-169	소로 2-7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98	소로 1-9	중로 3-14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1	10	국지 도로	36	중로2-169	소로2-6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2	10	국지 도로	34	중로2-169	소로2-8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3	10	국지 도로	36	중로2-169	소로2-7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4	10	국지 도로	34	중로2-169	소로2-8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9	8	국지 도로	78	소로2-110	소로2-6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0	8	국지 도로	98	소로2-69	소로3-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1	8	국지 도로	73	소로2-70	소로2-6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2	8	국지 도로	592	소로2-68	소로3-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9	8	국지 도로	78	소로2-110	소로2-6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0	8	국지 도로	98	소로2-69	소로3-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1	8	국지 도로	73	소로2-70	소로2-6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2	8	국지 도로	592	소로2-68	소로3-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3	8	국지 도로	190	소로2-72	소로3-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4	8	국지 도로	91	소로1-9	소로2-7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5	8	국지 도로	98	소로2-72	소로2-7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9	8	국지 도로	100	소로 1-9	중로 3-14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82	8	국지 도로	98	소로1-10	소로2-7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83	8~ 12	국지 도로	138	중로 2-169	중로 3-14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84	8	국지 도로	117	소로2-82	소로2-8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86	8	국지 도로	752	소로 1-6	중로 2-17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94	8	국지 도로	113	소로 2-96	소로 1-2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96	8	국지 도로	115	소로 1-27	소로 3-2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98	8	국지 도로	124	소로2-86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99	8	국지 도로	407	소로1-6	소로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0	8	국지 도로	42	소로2-86	소로2-9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1	8	국지 도로	36	소로2-99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2	8	국지 도로	500	소로3-18	소로2-10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3	8	국지 도로	40	소로2-86	소로2-10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4	8	국지 도로	36	소로2-102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5	8	국지 도로	82	소로1-6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6	8	국지 도로	136	소로1-6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10	8	특수 도로	25	대로1-19	소로2-69	보행자 전용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626	중로2-169	소로3-2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608	소로1-27	소로3-2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9	6	특수 도로	110	소로2-68	소로2-73	보행자 전용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20	6	특수 도로	34	중로2-169	소로2-86	보행자 전용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21	6	특수 도로	26	대로1-19	소로3-17	보행자 전용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56	대로1-19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23	6	국지 도로	1,053	중로1-169	소로1-2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2) 주 차 장 : 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개소		3,160.6	-	3,160.6		
기정	3	검암3주차장	노외 주차장	검암동 503-8	1,400.4	-	1,400.4	인고93-130 (`93.9.28)	
기정	4	검암4주차장	노외 주차장	검암동 515-1	1,760.2	-	1,760.2	인고93-130 (`93.9.28)	

3) 공 원 : 변경 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4개소		18,266.9	-	18,266.9		
기정	1	검여 근린공원	근린공원	검암동 496	12,475.2	-	12,475.2	인고93-130 (`93.9.28)	
기정	8	삼지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504-1	2,070.3	-	2,070.3	인고93-130 (`93.9.28)	
기정	9	허암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534-3	2,977.8	-	2,977.8	인고93-130 (`93.9.28)	
기정	10	검암 근린공원	근린공원	검암동 533	743.6 (296,396)	-	743.6 (296,396)	건고66-2701 (`66.8.31)	()는 전체면적

4) 녹 지 : 변경 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3개소		4,411.4	-	4,411.4		
기정	2	검암2녹지	완충녹지	검암동 492-3	540.7	-	540.7	인고93-130 (`93.9.28)	
기정	3	검암3녹지	완충녹지	검암동 525-4, 525-9	647.4	-	647.4	인고93-130 (`93.9.28)	
기정	4	검암4녹지	완충녹지	검암동 524-1	3,223.3	-	3,223.3	인고93-130 (`93.9.28)	

5) 학 교 : 변경 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3개소		32,721.3	-	32,721.3		
기정	5	초등학교	초등학교	검암동 495	10,395.3	-	10,395.3	인고93-130 (`93.9.28)	
기정	6	중 학 교	중 학 교	검암동 497	10,535.0	-	10,535.0	인고93-130 (`93.9.28)	
기정	7	초등학교	초등학교	검암동 536-1	11,791.0	-	11,791.0	인고93-130 (`93.9.28)	

6) 공 공 청 사 : 변경 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개소		649.5	-	649.5		
기정	6	파출소	공공청사	검암동 514-7	649.5	-	649.5	인고93-130 (`93.9.28)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A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11	31,852.7	1	26,010.8	공동건축
		2	5,841.9	
30	32,089.3	1	15,740.7	
		2	16,348.6	
31	15,740.8	1	15,740.8	
37	31,485.8	1	15,743.1	
		2	15,742.7	

2) 근린생활시설용지

- 필지규모 600㎡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수 지정

(단,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규모가 300㎡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적(㎡)	
7	5,617.1	1	1,633.6	4
		2-1	1,322.9	2
		2-2	697.6	-
		3	842.8	2
		4	545.6	-
		5	574.6	-
25	4,389.9	1	350.5	-
		2	500.1	-
		3	2,921.7	6
		4	251.7	-
		5	365.9	-
26	3,705.7	1-1	2,661.7	5
		1-2	1,044.0	-
27	2,415.9	1	1,044.0	2
		2	1,371.9	3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적(㎡)	
28	2,375.0	1	494.9	-
		2-1	194.4	공동건축
		2-2	196.0	
		2-3	220.5	
		2-4	221.2	-
		2-5	220.8	-
		3	209.1	-
		4	618.1	-
57	3,338.7	1	1,071.9	3
		2	274.8	-
		3	359.8	-
		4	424.4	-
		5	504.7	-
		6	703.1	-
58	2,983.7	1	313.2	공동건축
		2	113.7	
		3-1	220.8	-
		3-2	205.1	-
		3-3	447.2	-
		4	552.2	-
		5	580.8	-
		6	550.7	-
59	3,729.7	1	1,494.5	2
		2	724.6	-
		3	768.6	2
		4	345.3	-
		5	396.7	-
60	3,270.8	1	1,447.0	2
		2	653.0	-
		3	357.1	-
		4	257.2	-
		5	556.5	-
61	3,051.7	1	448.0	공동건축
		2	189.6	-
		3	144.1	공동건축
		4	239.4	-
		5	477.3	-
		6	250.1	-
		7	662.2	-
		8	641.0	-

가구 번호	변 경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적(㎡)	
28	2,375.0	1	494.9	-
		2-1	194.4	공동건축
		2-3	220.5	-
		2-4	221.2	공동개발
		2-5	220.8	
		3	209.1	-
		4	618.1	-
		57	3,338.7	1
2	274.8			-
3	359.8			-
4	424.4			-
5	504.7			-
6	703.1			-
58	2,983.7	1	313.2	공동건축
		2	113.7	
		3-1	220.8	-
		3-2	205.1	-
		3-3	447.2	-
		4	552.2	-
		5	580.8	-
		6	550.7	-
59	3,729.7	1	1,494.5	2
		2	724.6	-
		3	768.6	2
		4	345.3	-
		5	396.7	-
60	3,270.8	1	1,447.0	2
		2	653.0	-
		3	357.1	-
		4	257.2	-
		5	556.5	-
61	3,051.7	1	448.0	공동건축
		2	189.6	-
		3	144.1	공동건축
		4	239.4	-
		5	477.3	-
		6	250.1	-
		7	662.2	-
		8	641.0	-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68	3,738.0	1	121.9	-
		2	598.9	공동건축
		3	195.5	
		4	173.8	-
		5-1	556.6	-
		5-2	371.2	-
		5-3	348.6	-
		6	199.3	-
		7	527.6	-
		8	339.4	-
		9	305.2	-
69	614.4	4	614.4	-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28	2-4	공동개발 지정	효율적인 토지개발 도모
	2-5	공동개발 지정	효율적인 토지개발 도모

3) 단독주택용지

○ 필지규모 400㎡ 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수 지정.

(단,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규모가 200㎡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 단독주택용지(C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구 번호	기 정				가구 번호	변 경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	2,050.4	1	633.8	2	1	2,050.4	1	633.8	2
		2	1,416.6	4			2	1,416.6	4
2	3,158.4	1	289.7	-	2	3,158.4	1	289.7	공동개발
		2	117.7	-			2	117.7	
		3	196.3	-			3	196.3	-
		4	1,864.1	6			4	1,864.1	6
		5	428.1	2			5	428.1	2
		6	262.0	-			6	262.0	-
3	2,861.6	1	263.6	-	3	2,861.6	1	263.6	-
		2	294.5	-			2	294.5	-
		3	1,350.4	4			3	1,350.4	4
		4-1	345.6	-			4-1	345.6	-
		4-2	607.5	2			4-2	607.5	2
8	3,194.5	1-1	304.2	-	8	3,194.5	1-1	304.2	-
		1-2	300.0	-			1-2	300.0	-
		2	914.5	3			2	914.5	3
		3-1	265.3	-			3-1	265.3	-
		3-2	314.3	-			3-2	314.3	-
		3-3	403.2	2			3-3	403.2	2
		3-4	242.2	-			3-4	242.2	-
		3-5	354.1	-			3-5	354.1	-
9	3,330.9	1	594.0	2	9	3,330.9	1	594.0	2
		2	211.9	-			2	211.9	-
		3	186.6	-			3	186.6	-
		4	191.6	-			4	191.6	-
		5	267.1	-			5	267.1	-
		6	267.5	-			6	267.5	-
		7	152.6	-			7	152.6	-
		8	843.3	4			8	843.3	4
		9	123.8	-			9	123.8	-
		11	270.3	-			11	270.3	-
		10	90.5	-			10	90.5	-
		12	131.7	-			12	131.7	-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10	1,754.2	1	326.5	-
		2	151.2	-
		3	193.3	-
		4	174.9	-
		5	174.9	-
		6	320.8	-
		7	412.6	2
18	2,816.5	1	797.8	3
		2	1,088.8	5
		3	223.7	-
		4	353.2	-
		5-1	176.7	-
		5-2	176.3	-
19	3,188.4	2	898.3	2
		3	273.5	-
		4	443.2	2
		5	814.9	3
		6	758.5	2
20	4,985.7	1	964.5	3
		2	552.8	2
		4	195.0	-
		5	659.3	2
		6	568.7	2
		7	589.7	2
		8	241.3	-
		9	363.0	-
		10	398.9	-
		11	452.5	2
		21	3,737.8	1
2	565.3			2
3	404.7			-
4	807.5			-
43	2,576.5	2	2,576.5	8
45	1,999.7	2	269.8	-
		3	1,158.4	5
		4	295.6	-
		5	275.9	-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46	5,522.2	1	723.1	3
		2	1,645.0	6
		3	263.2	-
		4	1,282.4	4
		5	1,608.5	6
47	2,995.8	1	438.1	2
		2	440.5	2
		3	434.6	2
		4	505.5	2
		5	646.3	2
		6	530.8	2
49	2,288.6	1	1,794.4	4
		2	494.2	2
51	4,478.8	1	266.0	-
		2	212.0	-
		3	452.9	2
		4	854.6	4
		5	295.6	-
		6	158.1	-
		7	102.3	-
		8	103.3	-
		9-1	291.7	-
		9-2	333.5	-
		9-3	196.5	-
		9-4	202.8	-
		9-5	214.0	-
		10	795.5	3
52	4,696.6	1	1,005.1	4
		2	206.9	-
		3	179.9	-
		4	92.5	-
		5	456.8	-
		6	804.1	3
		7	507.2	2
		8	200.6	-
		9	442.9	2
		10-1	248.5	-
		10-2	248.1	-
		10-3	304.0	-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53	4,410.8	1	387.6	-
		2	317.6	-
		3	577.3	2
		4	243.3	-
		5	236.0	-
		6	658.1	2
		7	313.4	-
		8	543.9	2
		9	386.0	-
		10	385.9	-
		11	361.7	-
54	4,122.2	1	622.3	2
		2	117.6	-
		3	321.9	-
		4	580.5	2
		5	502.7	2
		6-1	233.0	-
		6-2	233.3	-
		7	344.5	-
8	1,166.4	5		
55	4,974.6	1	1,193.1	3
		2	751.9	2
		3	171.0	-
		4	297.3	-
		5	251.2	-
		6	515.1	2
		7	246.9	-
		8	312.4	-
		9	140.3	-
		10	192.7	-
		11	407.6	2
		12	495.1	2
56	4,518.4	1	845.5	4
		2	140.9	-
		3	401.2	2
		4	265.8	-
		5	323.6	-
		6	203.8	-
		7	488.5	2
		8	220.2	-
		9	96.0	-
		10	166.1	-
		11	694.3	3
		12	457.9	2
		13	214.6	-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62	4,958.1	1	385.5	-
		2	364.0	-
		3-1	594.9	2
		3-2	1,169.7	3
		4	539.3	2
		5	618.3	2
		6	288.5	-
		7	997.9	4
63	3,741.5	1	1,218.5	6
		2	783.0	2
		3	198.2	-
		4	490.7	2
		5	404.9	2
		6	646.2	3
64	4,219.0	1	623.9	2
		2-1	250.5	-
		2-2	250.9	-
		2-3	251.0	-
		2-4	251.0	-
		3	248.7	-
		4	147.6	-
		5	802.4	3
		6	147.5	-
		7-1	369.8	-
		7-2	363.7	-
		8	512.0	2
65	4,997.5	1	1,034.5	4
		2	774.2	2
		3	149.7	-
		4	460.5	2
		5	542.5	2
		6	978.4	4
		7	215.7	-
		8	310.7	-
		9	531.3	2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66	5,293.5	1	1,027.9	4
		2-1	238.1	-
		2-2	238.0	-
		2-3	237.3	-
		2-4	237.2	-
		2-5	237.1	-
		3	964.7	4
		5	176.0	-
		6	310.8	-
		7	143.8	-
		8	387.1	-
		9	298.6	-
		10	796.9	3
		67	6,150.9	1
2	384.1			-
3	260.6			-
	238.1			-
	238.2			-
	238.2			-
5	433.8			2
6	138.9			-
7	198.2			-
8	352.3			-
9	449.1			2
10	721.5			3
11	581.6			-
12	186.1			-
13	1,395.4	6		
69	1,940.6	1	229.7	-
		2	335.1	-
		3	754.9	3
		5	214.7	-
		6	143.6	-
		7	262.6	-
		70	2,953.2	1
2	335.8			-
3	671.7			2
4	679.5			3
5	340.1			-

■ 단독주택용지(C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2	1	공동개발 지정	과소획지 개발 유도
	2	공동개발 지정	과소획지 개발 유도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 변경 없음

■ 공동주택용지(A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1, 30, 31, 37	11, 30, 31, 37 (공동주택지 A용도)	용 도	허용용도	°별표1의 A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A 불허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19층 이하	
		형 태	°별표2의 A	
		배 치	°별표3의 A	
		색 채	°별표4의 A	
건 축 선	°별표3의 A			

2)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 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7,25,26,27,28,57, 58,59,60,61,68 (1~9),69(4)	7,25,26,27,28,57,58,5 9,60,61,68(1~9), 69(4) (근린생활시설용지 B용도)	용 도	허용용도	°별표1의 B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B 불허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 산정에 제외한 다. 단, 건축물의 용도전체가 연립주 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함)	
		형 태	°별표2의 B	
		배 치	°별표3의 B	
		색 채	°별표4의 B	
건 축 선	°별표3의 B			

3) 단독주택용지 : 변경

■ 단독주택용지(C1용도) 결정 조서(8m 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1~2),2(1~6),3(1~3,4-1~2),8(1-1~2,2,3-1~5,4),9(1,8~12),10(2~4),19(4~6),20(1~2,4~11),21(3~4),43(2),45(3~5),46(1~5),47(2~5),51(1~8,9-1~5),52(2~9,10-1~3),53(7~11),54(2~3,6-1~2,7),55(2~9),56(1~10,12~13),62(1~2,3-1~2),63(2~6),64(1,2-1~4,3~6),65(1,2-1~4,3~6),66(2~1~2,3,5~6),67(1~3,4-1~3,5~12),69(1,2~3,5~7),70(2~5)	1(1~2),2(1~6),3(1~3,4-1~2),8(1-1~2,2,3-1~5,4),9(1,8~12),10(2~4),19(4~6),20(1~2,4~11),21(3~4),43(2),45(3~5),46(1~5),47(2~5),51(1~8,9-1~5),52(2~9,10-1~3),53(7~11),54(2~3,6-1~2,7),55(2~9),56(1~10,12~13),62(1~2,3-1~2),63(2~6),64(1,2-1~4,3~6),65(1,2-1~4,3~6),66(2~1~2,3,5~6),67(1~3,4-1~3,5~12),69(1,2~3,5~7),70(2~5) 단독주택용지 C1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C1 지정 및 권장용도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C1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C1 불허용도			불허용도
		건 폐 율	*50% 이하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륜	*150% 이하		용 적 륜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높 이	*3층 이하	
		형 태	*별표2의 C1		형 태	*별표2 변경의 C1	
		배 치	*별표3의 C1		배 치	*별표3의 C1	
		색 채	*별표4의 C		색 채	*별표4의 C	
		건 축 선	-		건 축 선	-	

■ 단독주택용지(C2용도) 결정 조서(10m 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9(2~8),10(1,5~7),18(2~4,5-1~2),43(2),49(1~2),45(2),47(1,6),51(10),52(1),53(1~6),54(1,4~5,8),55(1,10~12),56(11),62(4~5,7),63(1),65(1~6),66(1,2~3~5,7~10),67(13),70(1)	9(2~8),10(1,5~7),18(2~4,5-1~2),43(2),49(1~2),45(2),47(1,6),51(10),52(1),53(1~6),54(1,4~5,8),55(1,10~12),56(11),62(4~5,7),63(1),65(1~6),66(1,2~3~5,7~10),67(13),70(1) 단독주택용지 C2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C2 지정 및 권장용도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C2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C2 불허용도			불허용도
		건 폐 율	*50% 이하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륜	*150% 이하		용 적 륜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높 이	*3층 이하	
		형 태	*별표2의 C2		형 태	*별표2 변경의 C2	
		배 치	*별표3의 C2		배 치	*별표3의 C2	
		색 채	*별표4의 C		색 채	*별표4의 C	
		건 축 선	-		건 축 선	-	

■ 단독주택용지(C3용도) 결정 조서(12m 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8(1), 19(2~3),21(1~2), 43(2)	18(1), 19(2~3),21(1~2), 43(2) 단독주택용지 C3	용 도	허용 용도	°별표1의 C3 지정 및 권장용도	18(1), 19(2~3),21(1~2), 43(2)	18(1), 19(2~3),21(1~2), 43(2) 단독주택용지 C3	용 도	허용 용도	°별표1의 C3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 용도	°별표1의 C3 불허용도				불허 용도	°별표1의 C3 불허용도
		건 폐 율	°50% 이하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륜	°150% 이하	용 적 륜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높 이			°3층 이하		
		형 태	°별표2의 C3	형 태			°별표2 변경의 C3		
		배 치	°별표3의 C3	배 치			°별표3의 C3		
		색 채	°별표4의 C	색 채			°별표4의 C		
건 축 선	-	건 축 선	-						

4) 교육시설용지 : 변경 없음

■ 교육시설용지(D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4,6,45(1)	4,6,45(1) (교육시설용지 D용도)	용 도	°학교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륜	°1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5) 공공청사용지 : 변경 없음

■ 공공청사용지(E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57(7)	57(7) (공공청사용지 E용도)	용 도	°공공청사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6) 주차장용지 : 변경 없음

■ 주차장용지(F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0(8),43(1)	10(8),43(1) (주차장용지 F용도)	용 도	°주차장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지평식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별표3의 C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별표 1] : 건축물 용도 분류표 : 변경 없음

[별표 2] : 건축물 형태 분류표 : 변경

[별표 3] : 건축물 배치 분류표 : 변경 없음

[별표 4] : 건축물의 색채 분류표 : 변경 없음

[별표 5] : 차량동선·주차시설·단지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별표 6] :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별표 7]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 변경 없음

[별표 8] : 기타사항 : 변경 없음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변경 없음)

구분	A	B	C1	C2	C3	D~F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축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D) 공공청사(E) 주차장(F)
권장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 집회장 (타종 및 확장장치 없는 것에 한함)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도서관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도서관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 12m이상도로에 12m 접함)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소매점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 					

- 주1) 단독주택지(C)의 경우 경사지붕내에 설치하는 다락의 층고를 1.5m초과 1.8m이하로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는 다락층을 포함하여 4층이하, 용적률 180% 이하로 완화
- 주2)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 통로는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
- 주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가구 및 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에 한함
- 주4)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유도하되 다른 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주5) 가설건축물 제한(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 판넬, 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
- 주6) 권장용도(C1,C2,C3)는 도로폭원에 따라 완화하고 있으나 도로모퉁이변(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하는 획지)에 대해서는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
- 주7) 획지분할시 전면이 기준에 접한 도로 폭보다 적은 도로에 접할 경우, 좁은 도로변의 용도 적용

[별표 2]

건축물 형태 분류표 (기정)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형태
공동주택용지(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를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 ㄴ”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근린생활시설용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 ◦근린생활시설의 1층 셔터는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검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단독주택용지(C1, C2, C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단, 다른 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하여 우리 동네라는 분위기 창출을 위한 공간형성)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지하층의 주거용도 이용을 금지토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도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0m로 제한 ◦검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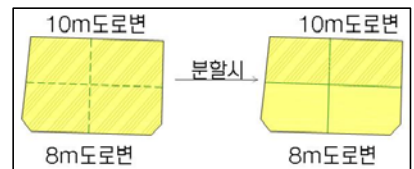
건축물 형태 분류표 (변경)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형태
공동주택용지(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ㄴ”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근린생활시설용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 ◦근린생활시설의 1층 셔터는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검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단독주택용지(C1,C2,C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하되 다른 형태의 지붕도 설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하여 우리 동네라는 분위기 창출을 위한 공간형성)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지하층의 주거용도 이용을 금지토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도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0m로 제한 (단, 경사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붕의 가중평균선을 기준으로 1층의 높이를 산정) ◦검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별표 3]

건축물 배치 분류표 (변경 없음)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배치
공동주택용지 (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 ◦중로 2-169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 재료, 형태,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 ◦담장 설치 : 도로에 면한 단지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높이 1.2m 이하) 설치를 권장 - 공원 및 녹지시설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담장(높이 1m이하) 설치 - 동일 블록내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사용, 통일화된 형태로 블록별 일체감 부여 ◦담장설치불허구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담장을 없애고 같은 동네로서의 공간형성) - 건축한계선 지정 구역(담장 설치를 불허하여 일반인의 활용 유도) ◦같은 단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가급적 한가지로 통일토록 권장
근린생활시설용지 (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중로 2-169호선, 중로 2-171호선, 중로 2-172호선, 중로 3-145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 재료, 형태,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0.6m이하의 식수대, 높이 1.0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담장으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가로변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에 면한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단독주택용지 (C1,C2,C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2m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 재료, 형태,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담장으로 설치 ◦폭 12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획지분할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이 8m 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1적용 - 전면이 10m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2적용 - 전면이 12m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3적용 ◦권장용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모퉁이변(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한 획지에 대한 기준은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



[별표 5]

차량동선, 주차시설, 단지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기 타 사 항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 간선 및 집산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1) 차량출입불허구간

- 종로 2-169호선변의 주차통로를 제외한 구간
-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30m이내의 구간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10m이내 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

2) 주차통로

- 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에서의 진출입을 가능한 억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획지 1개소당 1개소의 주차통로 설치를 유도하며 1개소당 통로폭은 최소3m이상 확보
(단, 획지의 분할 및 합병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위치선정)

◦ 주차에 관한 계획

- 공동주차장 설치 및 공동진출입 유도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세대당 1대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유도
- 근린생활 용지내 다가구주택은 1가구당,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1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권장

■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 기본방향

- 보행활동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치
-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 대중 인식이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

[별표 6]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용도	도면 표시	도시계획도로	
도시 계획 도로	-	가로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한 수량으로 설치토록 유도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복합적 기능을 갖도록 설치 ◦시설간에 통일성 있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하여 가로를 장식할 수 있도록 설치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지역별, 가로망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인천시의 시목인 목백합 또는 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가로수는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띄워서 식재하며, 식재간격은 6~8m을 기준으로 함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 - 포장구획을 소단위로 하여 친근감 유지 - 재료는 소형고압블럭 및 일반콘크리트블럭 등의 재료 사용 유도 ◦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조명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조절 - 조명등의 설치타입은 주변여건에 적합되도록 선택 ◦보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닿도록 계획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별표 7]**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변경 없음)**

-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별표 8]**기 타 사 항 (변경 없음)**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서구 관련조례를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2.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부분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51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0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원당지구 111블록 3로트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건설공사
2. 사업주체 : (주)남경엔케이 대표 이원근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서구 원당지구 111블록 3로트
 - 나. 대지면적 : 1,023.7m²
 - 다. 연 면 적 : 1,997.045m²
 - 라. 사 업 비 : 3,100,514,000원
 - 마. 사업규모 : 지상 5층 4개동 32세대
4. 사업기간 : 2010.11. ~ 2011.11.
5.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 처리사항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52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서구노인복지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 및 건축과(560-472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 10. 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변경사유 : 지적측량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전환에 따른 대지면적감소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연면적 증가
2. 사업시행지(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37-3번지 일원(당초)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05-2번지 일원(변경)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명칭】 서구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 : A(연면적) = 50,683㎡(당초)
A(연면적) = 71,420㎡(변경)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명】 (재)인천교우 천주교회 유지재단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3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2008. 9월 ~ 2010. 12. 30(당초)
2008. 9월 ~ 2012. 12. 30(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붙임과 같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변경) : 붙임과 같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과 같음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당초(허가일 2008.07.15)				변경 후				증감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대상면적	편입면적			공부상면적	공원면적				
1	서곡동 서곡동	205-2	답	1,051	1,051	205-2	답	1,051	-	1,051	인천시 중구 답동 3	인천시 중구 답동 3	
2	서곡동 서곡동	205-3	답	694	694	205-3	답	694	-	694	인천시 중구 답동 3	인천시 중구 답동 3	
3	서곡동 서곡동	205-4	답	258	258	205-4	답	258	-	258	인천시 중구 답동 3	인천시 중구 답동 3	
4	서곡동 서곡동	205-5	답	3,346	3,346	205-5	답	3,401	-	3,401	인천시 중구 답동 3	인천시 중구 답동 3	등록사항정정(면적)
5	서곡동 서곡동	205-10	답	1,656	1,656	205-10	답	1,656	-	1,656	인천시 중구 답동 3	인천시 중구 답동 3	
6	서곡동 서곡동	205-14	대	620	592	205-14	대	620	28	592	인천시 중구 답동 3	인천시 중구 답동 3	
7	서곡동 서곡동	222-21	대	1,556	1,556	222-21	대	1,556	-	1,556	인천시 중구 답동 3	인천시 중구 답동 3	
8	서곡동 서곡동	236-1	대	268	268	236-1	대	274	-	274	인천시 중구 답동 3	인천시 중구 답동 3	등록사항정정(면적)
9	서곡동 서곡동	산37-3	임	3,403	3,403								
10	서곡동 서곡동	산37-4	임	174	174								
11	서곡동 서곡동	산37-8	임	10,639	10,100								
12	서곡동 서곡동	산37-16	임	513	513	205-15	임	17,906	539	17,367	인천시 중구 답동 3	인천시 중구 답동 3	등록사항정정(면적) 2010. 10. 11
13	서곡동 서곡동	산37-17	임	1,625	1,625								
14	서곡동 서곡동	산37-18	임	1,829	1,829								
15	서곡동 서곡동	산39-5	임	1,785	1,665	205-16	임	1,660	120	1,540	인천시 중구 답동 3	인천시 중구 답동 3	등록사항정정(면적)
	계			29,417	28,730			29,076	687	28,389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5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검단 힐스테이트 1단지아파트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주)한시스 대표 이종대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서구 오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74블록 2로트
 - 나. 대지면적 : 19,590.40㎡
 - 다. 연 면 적 : 60,819.224㎡
 - 라. 사 업 비 : 158,372,373,000원
 - 마.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20층 5개동 348세대
4. 사업기간 : 2007.11.20 ~ 2010.12.01
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변경사항 없음 ”
6. 변경사항
 - 가. 조경특화에 따른 조경면적 증가
 - 나. 주동지하주차장 연결출입구 폭 확보
 - 다. 근린생활시설 장애인화장실 변경
 - 라. 단위세대 단열재 추가 및 일부세대 창호개선
 - 마. 주민공동 시설 내부 칸막이 변경
 - 바. 옹벽 재질변경 및 신설
 - 사. 우·오수 배수관 확충 개선 등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5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검단 힐스테이트 2단지아파트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주)한백씨엔티 대표 이종대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서구 오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76블록 1~9로트
 - 나. 대지면적 : 17,891.50m²
 - 다. 연 면 적 : 56,848.709m²
 - 라. 사 업 비 : 148,143,772,000원
 - 마.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19~ 20층 4개동 303세대
4. 사업기간 : 2007.11.20 ~ 2010.12.01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변경사항 없음 ”
6. 변경사항
 - 가. 조경특화에 따른 조경면적 및 어린이놀이터 증가
 - 나. 근린생활시설 장애인화장실 변경
 - 다. 단위세대 단열재 추가 및 일부세대 창호개선
 - 라. 주민공동 시설 내부 칸막이 변경
 - 마. 옹벽 재질변경 및 신설
 - 바. 우·오수 배수관 확충 개선 등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088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05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며,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정하는 보조사업이외의 자체 사업을 추진 지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명 제정 :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다문화가족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 보조사업 이외의 자체사업을 추진 하고,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 활용(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32) 또는 Fax(560-497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정하는 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의 이해를 위한 교육과 홍보
2.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
3. 결혼이민자등을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4.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5. 다문화가족의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가족상담·부부상담·부모교육·가족생활교육 추진

6.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7.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 할 수 있도록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8.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 교육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제2호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다문화가족지원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 구의원 2명 및 결혼이민자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그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품위손상, 활동미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위원의 임기)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구청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및 개인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 ~ . . .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 ~ . . .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0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에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추가
-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인의 권익보호와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용료 등 납부기준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2항)
- 나. 사용료 사용 예정일 전후사용 취소에 대한 반환규정 신설(안 제10조제1항의 제4호, 제5호)
- 다. 수강료의 반환에 있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적용근거 마련(제10조제2항)
- 라.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추가(안 별표 1)
- 마. 수련시설의 사용료 현실화(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인재육성과장, 전화:560-5892, FAX:560-59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당일에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와 수영 수강료 및 수영장 이용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의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총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5.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사용 개시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서구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92 (원창동 93-5)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 (연희동 712)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90 (가정동 430-21)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88번길 3 (마전동 24블럭 6,8롯데)	

[별표 2]

서구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등(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구분	오전 (08:00-12:00)	오후 (12:00-18:00)	야간 (18:00-22:00)	비 고
공 연 장	공연(영화)	30,000	45,000	70,000	
	행 사	45,000	65,000	90,000	
강의실 등	교 육	20,000	30,000	40,000	1실 기준

【 비 고 】

1.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2. 시설사용 허가시 사용자가 사용시간(오전, 오후, 야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3.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 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면 다음회 사용료의 50%,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면 다음회 사용료의 30%, 30분 미만이면 다음회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또한 22시 이후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15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사용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부속설비		구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피아노			1회공연	30,000	
무대시설	공바톤		1회1개	10,000	
무대음향	마이크		기본3개 추가 1개당	10,000 3,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특수마이크	PIN	1일1개	30,000	
		W/L	1일1개	20,000	
	M R (A R , B G M)		1시간	10,000	
	L C D 프 로젝 트		1회공연	20,000	
무대조명	조명		1시간	20,000	○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특수효과기	포그머신 (액별도)	1회공연 1대	20,000	
		드라이아이스 (액별도)	1회공연 1대	10,000	
냉난방	○ 계절에 따른 봄·가을철, 여름철, 겨울철로 구분하여 시설별 시간당 냉난방기 소비전력, 한국 전력 전기요금표 등에 10%가산한 범위내에 산출한 사용료를 계산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냉방 : 6월~8월, 난방 : 11월~3월 ※ 기온급변시 사용자와 협의조정 가능함.				
대소도구	○ 1회 사용료 : 단위당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에 한하여 취득가액에서 매년 감가상각(5%)비를 감한 자산가액의 5%를 기준 사용료로 계산함.				

【 비 고 】

1. 피아노, 무대시설, 무대음향, 무대조명 중 공연(행사)연습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3. 수영장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성 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이하	
강습회원 (월 이용)	개 인	52,000	40,000	35,000	
	단 체	43,000	33,000	30,000	
자유회원 (월 이용)	개 인	42,000	30,000	25,000	
	단 체	36,000	24,000	20,000	
1일 이용	개 인	3,000	2,000	1,500	
	단 체	2,800	1,500	1,200	

【 비 고 】

1.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2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해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강습회원(월 이용)이란 수영프로그램을 1개월 단위로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유회원(월 이용)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고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시 수강료를 할인 또는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